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 확인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46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11
2. [별표 1의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12
2-1. 2024~202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13
3. [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15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7
5. ‘약물 오용·남용 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	1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20.

다. 회 부 일 :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건강검사”의 범위에 포함하고, 학생에 대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u>질병의 유무</u>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u>질병의 유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誤用)·남용(濫用) 유무</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u>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약물의 오용·남용 관련 교육</u> 2. <u>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u>

현행	개정안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약물 오용·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¹⁾으로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제2조²⁾에서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건강검사”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7조³⁾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

1)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를 실시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과 중학교·고등학교의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 따른 건강검진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및 제5조의2⁴⁾에서는 건강검사를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제5조⁵⁾에서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4)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5)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한 검사,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 건강검사 유형 >

검사항목	대상 학년	주요 내용
신체 발달상황	초1 ~ 고3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건강조사	초1 ~ 고3	표본학생 건강조사표 사용 - 조사결과 분석 후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
정신건강	초1·4/중1/고1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실시
건강검진	초1·4/중1/고1 *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초등 전체학년), 병리검사(학교 건강검사규칙규칙 제5조) - 검진기관에서 실시 하며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결과 분석자료는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또한, 같은 법 제9조6)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⁷⁾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같은 법 제9조의2⁸⁾에서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참고자료1,2,3】 별표1·별표1의2·별표2 참조

6)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마약류”의 정의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8)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한 보건교육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⁹⁾ 이상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¹⁰⁾

<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법정교육 현황 >¹¹⁾

근거 법률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주기)
학교보건법	보건교육	초,중,고	연간 17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유,초,중,고	연간 10시간 (학기당 2회)
아동복지법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취학전, ,초,중,고	연간 10시간 (3개월 1회)

자료: 교육부

그러나, 2023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7.1%에 달하는 등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오용·남용의 문제가 심화되고,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각급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9) 1시간 기준: 초(40분), 중(45분), 고(50분)

10) 보건과목 운영학교의 경우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11) 【참고자료 5】 ‘약물 오용·남용 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 참조

< 연도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

(단위: 명,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9세 이하 마약사범 수	239	313	450	481	1,477
전년대비 증가율	-	31.0	43.8	6.9	207.1

자료: 「2023 마약류 범죄백서」 170p,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토대로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약물의 오용·남용에 관한 관련 교육 강화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다만,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한 건강조사의 항목과 조사방법¹²⁾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예방접종/병력, 식생활/비만,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항목 및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실명검사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설문지 응답) 결과에 따라 사범처리될 우려에 대한 부담감으로 건강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현재도 마약류 오용·남용과 관련한 사항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¹³⁾,

12) 【참고자료 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참조

최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¹⁴⁾되어 체계·자구 심사 중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¹⁵⁾(의안번호 2204908,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관리법」 제51조의¹⁶⁾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생들을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

13) 【참고자료 2-1】 “2024~202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건강조사표” 참조

14) '25.1.7.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8,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교에서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 유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건강검사 또는 건강검진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검사(생활 습관 조사)는 개인별 실명검사 특성상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거부(학부모 미동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실시할 경우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될 우려가 있고,

건강검진(질병 유무 검사)의 경우 소변을 이용한 간이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 통상 10일 이내 노출 상태만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기투약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 중단하면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마약류 노출 검사의 종류 >

구 분	검사방법	대상 마약류	사용 기관	특징
소변 검사	간이검사키트 (아큐사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성분, 코카인, 몰핀, 헤로인	국과수	10일 이내 노출 여부만 확인 가능
	간이검사키트 (TBPE)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몰핀	일반병원 (약 2만원/회)	
경조직 검사 (모발, 체모, 손톱 등)	기기 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성분, 코카인, 몰핀, 헤로인	국과수	수개월 내 노출 여부 확인 가능

주: 혈액검사도 가능하나 1일 이내 노출 여부만 확인 가능하여 제한적으로 활용

자료: 교육부

또한, 8개 시·도교육청¹⁷⁾과 보건교사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17)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처리 문제, 치료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학생의 조사 및 처리 문제, 낙인효과 문제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노출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2)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교: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병력	가. 전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예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 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 조사방법

시·도교육감은 위 조사항목 및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2-1

2024~202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건강조사표 [초등학교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라면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음료수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육류(소, 돼지, 닭고기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우유, 유제품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과일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채소(김치 제외)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있는 대로 고르시오)

-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수면 및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개인위생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예	아니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예	아니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스케이트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예	아니오
TV·인터넷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예	아니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예	아니오
가정 및 학교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다.	예	아니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예	아니오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예	아니오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예	아니오
	위의 문제로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약물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정서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	아니오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예	아니오
부모님관	귀하의 자녀가 만 5세 이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뛰어다니거나 말을 많이 합니까? (1학년만)	예	아니오
	귀하의 자녀는 주의력이 없고 주의가 산만합니까?(1학년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건강조사표 [중·고등학교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학 년 / 반 / 번 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라면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음료수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육류(소, 돼지, 닭고기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우유, 유제품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과일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채소(김치 제외)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수면 및 신체활동	하루 30분~1시간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며칠이나 합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③ 3 - 4일 정도	② 1 - 2일 정도 ④ 5일 이상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③ 7-8시간	② 6-7시간 ④ 8시간 이상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개인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예	아니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예	아니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스케이트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예	아니오
인터넷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③ 2번	② 1번 ④ 3번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예	아니오
가정 및 학교생활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예	아니오
약물	학교 생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성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예	아니오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 · 목부위림프절비대 · 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 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 · 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세포 효소(AST · 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葉]: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490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법」 제51조의4제1항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 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별표1의2)>

1.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2. 조사방법

시·도교육감은 위 조사항목 및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설문지 예시

지표명	지표 정의	설문 문항	분자	분모	비고
다이어트 약물 경험 률	살을 빼기 위해 약을 먹어 본 사람의 비율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 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 한다	살을 빼기 위해 약을 먹어 본 사람의 수 응답보기: ③	해당 문항 응답자 응답보기: ①~④	
가족 내 흡연자 비율	가족 내 흡연자 가 있는 사람의 비율	[초등학생]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 우는 사람이 있다. ①예 ②아니오	가족 내 흡연자가 있는 사람의 수 응답보기: ①	해당 문항 응답자 응답보기: ①,②	초등학생 대 상
가족 내 과음자 비율	가족 내 과음자 가 있는 사람의 비율	[초등학생]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 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 람이 있다. ①예 ②아니오	가족 내 과음자가 있는 사람의 수 응답보기: ①	해당 문항 응답자 응답보기: ①,②	초등학생 대 상
음주 흡연전문 가와 상담 요청률	술이나 담배 문 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①예 ②아니오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 요한 사람의 수 응답보기: ①	해당 문항 응답자 응답보기: ①,②	중, 고등학생 대상

2.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 별표1(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구분		유	초	중	고
교육시간	약물 중독예방	10	10	10	10
	사이버 중독예방				
학기당 교육횟수		2	2	2	2

- 별표2(학교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약물 부분 발췌)**

구분	교육내용
유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초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중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6) 교육기준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약물류 내용)

구분	교육내용
취학전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초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중·고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항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규정,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발체)

※ 실시주기 및 총시간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